

2019년 5월 15일

주주 귀하

후쿠오카현 하카타시 하카타구 하카타에끼마에 2초메 17번 1호  
주식회사 J T C  
대표이사 구 철모

제 2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실질소유자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 25 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일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아래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의결권행사신청서 용지에 찬반 표시 후 2019년 5월 22 일(수요일)  
오후 5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2. 장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KBIZ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 2 대회의실
3. 목적사항  
보고사항
  1. 제 25 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사업보고의 내용, 연결결산서류의  
내용 및 회계감사인, 감사회 연결결산서류 감사결과 보고의 건
  2. 제 25 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류 내용 보고의 건
 결의사항
  - 제 1 호 의안 잉여금 처분의 건
  -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이사 (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제외함) 6명 선임의 건
  - 제 4 호 의안 감사등위원인 이사 3명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이사 (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제외함) 의 보수액등설정의 건
  - 제 6 호 의안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액등설정의 건
  - 제 7 호 의안 퇴임이사 및 퇴임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불의 건
4.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1) 의결권행사(신청)서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당일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신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신청한  
의결권행사만이 유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주주의 경우, 의결권행사신청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및 신분증을 주주총회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JTC

대 표 이 사 구 철 모

이상

~~~~~  
주주총회 당일 출석하시는 주주님께서서는 의결권행사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사업보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1. 기업집단의 현황

#### (1) 당사업연도의 사업 상황

##### ① 사업경과 및 성과

당연결회계연도에서의 일본 경제는 기업 수익과 고용 환경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려되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사 그룹의 주요 사업인 소매 사업에 관련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에 대해서 일본정부 관광국(JNTO)의 보고를 보면 2018년 9월에 상륙한 태풍 제비와 같은 달에 발생한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의 영향으로 9월은 2013년 1월 이래 5년 8개월만에 전년 동월에 비해 밀돌았지만 그 외 달에서는 모두 전년을 웃도는 등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금까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견인해온 동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대만, 홍콩에서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한편 태국과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및 중국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전체를 보면 210만 명 증가(전년대비 7.2% 증가)한 3,147만명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사 그룹의 주요 고객인 단체 투어 이용객 획득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나가사키현 쓰시마시로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바다의 관문인 쓰시마시의 히타카쓰 지역으로 출점하고 크루즈 입항의 증가가 예상되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도 신규 출점을 하는 등 단체 관광객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엄선해 수요 유치를 대비해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 여행객에 대한 시책으로 제작년에 오픈한 DOTON PLAZA 오사카에서 오리지널 브랜드 숍 'MoaMoro'를 오픈하여 감도가 높은 상품 라인업의 내실화를 꾀하여 개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핵심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연결 자회사 2개사를 설립하는 한편 3개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연결대상으로 하는 등 해외에서의 사업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기업 지배 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사외 이사 1명을 증원하고 외부 시점에 의한 감독 기능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다양성과 포괄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재 육성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당연결회계연도의 업적은 매출액 51,975 백만엔, 영업이익 2,396 백만엔, 경상이익 2,353 백만엔, 모회사 주주에 귀속하는 당기 순이익은 1,101 백만엔이 되었습니다.

당사 그룹은 소매사업만의 단일 세그먼트이므로 세그먼트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설비투자의 상황

당연결회계연도에서 실시한 당사 그룹의 설비 투자의 총액은 1,796 백만엔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설비투자 상황 점포 신설(2 개 점포)
- ② 자회사의 설비 투자 상황  
주식회사 케이박스 점포용 토지건물 취득

③ 자금조달 상황

당연결회계연도 중에 당사 그룹의 소요 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금으로 2,600 백만엔을 조달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6일 한국거래소(KOSDAQ 시장) 상장과 더불어 공모증자로 총액 8,447 백만엔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④ 타사의 주식 기타 지분 혹은 신주예약권 등의 취득 혹은 처분 상황

- ① 당사는 2018년 4월 17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고 주식회사 케이박스를 설립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당사의 출자비율은 100.0%이며 동사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입니다.
- ② 당사는 2018년 5월 3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주할당증자에 의해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주식 810,000주를 취득했습니다.
- ③ 주식회사 케이박스는 2018년 6월 22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식회사 케이씨텍스프리의 주식 122,500주를 취득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출자비율은 51.0%로 동사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입니다.

- ④ 당사는 2018년 7월 10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주할당증자에 의해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주식 1,600,000주를 취득했습니다.
- ⑤ 주식회사 케이박스는 2018년 11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주식 14,000,000주를 취득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출자비율은 70.0%이며 당사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입니다.
- ⑥ 주식회사 케이박스는 2018년 12월 7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주할당증자에 의해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주식 7,407,410주를 취득했습니다.
- ⑦ 주식회사 케이박스는 2019년 1월 7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주할당증자에 의해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주식 7,407,410주를 취득했습니다.
- ⑧ 주식회사 시티플러스는 2019년 1월 10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식회사 톱 시티 면세점의 주식 54,000주를 취득했습니다.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동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100.0%이며 당사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입니다.
- ⑨ 주식회사 시티플러스는 2019년 1월 29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고 주식회사 디에프케이박스를 설립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출자비율은 100.0%로 당사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입니다.

(2) 직전 3사업연도의 재산 및 손익 상황

① 기업집단의 재산 및 손익 상황

| 구분                         | 제 22 기<br>(2016 년 2 월기) | 제 23 기<br>(2017 년 2 월기) | 제 24 기<br>(2018 년 2 월기) | 제 25 기<br>(당연결회계연도)<br>(2019 년 2 월기) |
|----------------------------|-------------------------|-------------------------|-------------------------|--------------------------------------|
| 매출액(백만엔)                   | -                       | -                       | -                       | 51,975                               |
| 경상이익(백만엔)                  | -                       | -                       | -                       | 2,353                                |
| 모회사 주주에 귀속하는<br>당기순이익(백만엔) | -                       | -                       | -                       | 1,101                                |
| 1 주당 당기 순이익(엔)             | -                       | -                       | -                       | 32.17                                |
| 총자산(백만엔)                   | -                       | -                       | -                       | 34,193                               |
| 순자산(백만엔)                   | -                       | -                       | -                       | 23,166                               |
| 1 주당 순자산(엔)                | -                       | -                       | -                       | 634.67                               |

주)당연결회계연도에서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제 24 기 이전의 상황은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당사의 재산 및 손익 상황

| 구분                             | 제 22 기<br>(2016 년<br>2 월기) | 제 23 기<br>(2017 년<br>2 월기) | 제 24 기<br>(2018 년<br>2 월기) | 제 25 기<br>(당연결회계연도)<br>(2019 년 2 월기) |
|--------------------------------|----------------------------|----------------------------|----------------------------|--------------------------------------|
| 매출액(백만엔)                       | 65,853                     | 50,145                     | 53,379                     | 49,491                               |
| 경상이익(백만엔)                      | 9,996                      | 3,952                      | 3,090                      | 2,702                                |
| 모회사 주주에게<br>귀속하는<br>당기순이익(백만엔) | 6,205                      | 1,964                      | 262                        | 1,659                                |
| 1 주당 당기 순이익(엔)                 | 247.47                     | 78.34                      | 10.48                      | 48.46                                |
| 총자산(백만엔)                       | 21,931                     | 23,362                     | 22,502                     | 32,823                               |
| 순자산(백만엔)                       | 11,351                     | 13,015                     | 13,177                     | 22,794                               |
| 1 주당 순자산(엔)                    | 452.67                     | 519.00                     | 525.48                     | 651.17                               |

(3) 중요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상황

① 모회사의 상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중요한 자회사의 상황

| 회사명           | 자본금         | 당사 의결권 비율 | 주요 사업내용         |
|---------------|-------------|-----------|-----------------|
| 주식회사 케이박스     | 25,000 백만 원 | 100.0%    | 한국사업의<br>홀딩스 기능 |
|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 34,814 백만 원 | (70.0)%   | 소매업             |
| 주식회사 케이티씨텍스프리 | 1,200 백만 원  | (51.0)%   | 소매업             |
| 주식회사 탐시티면세점   | 1,000 백만 원  | (70.0)%   | 소매업             |
| 주식회사 디에프케이박스  | 1,000 백만 원  | (70.0)%   | 소매업             |

주) 1 위의 중요한 자회사 5 개사는 모두 연결 자회사입니다.

2 당사의 의결권 비율에서 ( ) 내 숫자는 간접 소유 비율입니다.

**(4) 대처해야 할 과제**

당사 그룹은 관광 관련 사업을 통해 당사 그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2020년에는 방일 외국 관광객수 4,000 만명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의 일정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경제 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다른 업종과 글로벌 면세점의 참여, 기존 소매점의 면세 비즈니스 강화로 인바운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사 그룹은 작년도에 이어서 구매자수의 증가 및 구매 단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수의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미출점 지역 또는 기존 점포와 상승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매 단가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해서는 가족층, 청년층, 재방문객 등이 선호하는 상품 라인업의 내실화 및 PB 상품의 강화를 더욱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연구하여 관광산업 창조기업의 실현을 위한 수익 기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결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한국에서의 해외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수익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급격한 조직 확대에 대응한 관계사 관리 체제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및 인사제도의 재검토, 사내 연수제도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주요 사업 내용(2019년 2월 28일 현재)**

당사 그룹의 사업은 소매사업만의 단일 세그먼트로 해외에서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여행 선물을 판매하는 점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그룹은 단일 세그먼트이므로 세그먼트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주요 영업소(2019년 2월 28일 현재)

① 당사

|    |                                                                                                                                                                                    |
|----|------------------------------------------------------------------------------------------------------------------------------------------------------------------------------------|
| 본사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2초메 17번 1호                                                                                                                                                |
| 점포 | 동일본 지역 총괄부<br>6개 점포(홋카이도, 도쿄도, 야마나시현)<br>서일본 지역 총괄부<br>3개 점포(아이치현, 오사카부)<br>규슈 제1 지역 총괄부<br>5개 점포(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나가사키현)<br>규슈 제2 지역 총괄부<br>11개 점포(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 |

주)규슈 제2 지역 총괄부의 점포수는 고객 방문에 따라 오픈하는 임시 점포 4곳을 포함합니다.

② 자회사

| 회사명           | 소재지            |
|---------------|----------------|
| 주식회사 케이박스     | 본사(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 본사(대한민국 인천광역시) |
| 주식회사 케이티씨텍스프리 | 본사(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주식회사 탐시티면세점   | 본사(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주식회사 디에프케이박스  | 본사(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7) **사용인 상황(2019년 2월 28일 현재)**

① **기업집단의 사용인 상황**

|      |           |               |
|------|-----------|---------------|
| 사업구분 | 사용인수      | 전연결회계연도말대비 증감 |
| 소매사업 | 780(280)명 | -             |

- 주) 1 사용인수는 취업인원(당사 그룹에서 그룹 외부로의 파견자 제외. 그룹 외부에서 당사 그룹으로의 파견자 포함)이며 파트타임 및 촉탁사원은 ( ) 내에 연간 평균인원을 외수로 기재했습니다.  
 2 당사 그룹은 소매사업의 단일 세그먼트이므로 세그먼트별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당기부터 기업집단의 사용인 상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전기와의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 사용인의 상황**

|           |               |       |        |
|-----------|---------------|-------|--------|
| 사용인수      | 전년사업연도말대비 증감  | 평균연령  | 평균근속연수 |
| 639(265)명 | 68명 감소(6명 증가) | 31.0세 | 3.0년   |

- 주)1 사용인수는 취업인원(당사에서 사외로의 파견자 제외. 사외에서 당사로의 파견자 포함)이며 파트타임 및 촉탁사원은 ( ) 내에 연간 평균인원을 외수로 기재했습니다.

(8) 주요 차입처 상황(2019년 2월 28일 현재)

| 차입처             | 차입금       |
|-----------------|-----------|
| 주식회사 이요 은행      | 1,144 백만엔 |
| 주식회사 미쓰이 UFJ 은행 | 878 백만엔   |
| 주식회사 미즈호 은행     | 870 백만엔   |
| 주식회사 오이타 은행     | 562 백만엔   |
|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 483 백만엔   |
| 주식회사 리소나 은행     | 450 백만엔   |
|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 332 백만엔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304 백만엔   |
| 주식회사 지쿠호 은행     | 290 백만엔   |
| 주식회사 니시니혼 시티 은행 | 53 백만엔    |

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한국 원으로 받은 용자는 당연결회계연도말 현재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기준 환율에 의거해 일본 엔으로 환산해서 산출했습니다.

(9) 기타 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주요 사항

- ① 당사는 한국거래소(KOSDAQ 시장)에서 승인을 받아 2018년 4월 6일부로 당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증권으로 상장했습니다.
- ② 당사는 2017년 6월 27일에 후쿠오카국세국장으로 부터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경정 통지서 및 가산세 부과 결정 통지서> 등을 수령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처분 등에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20일에 후쿠오카 국세불복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8년 9월 13일에 동 심판소장으로부터 당사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서 등본을 수령했으므로 2019년 3월 7일에 도쿄지방법원에 대해 경정 처분 등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③ 당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관세청에 의해 보세판매시장 특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특허제도는 5년마다 갱신하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의 갱신 시기는 2020년 8월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갱신 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당사 방침은 두 터미널 보세 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 주식 상황(2019년 2월 28일 현재)

- (1) 발행가능주식 총수 100,308,000 주
- (2) 발행한 주식의 총수 35,005,517 주
- (3) 주주 수 1 명
- (4) 예탁증권보유자 수 11,910 명
- (5) 예탁증권의 주요 보유자(상위 10 명)

| 이름 혹은 명칭                           | 예탁증권수      | 보유비율  |
|------------------------------------|------------|-------|
| 구철모                                | 20,703,000 | 59.1% |
| 주식회사 KU                            | 1,440,000  | 4.1%  |
|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231,997    | 0.7%  |
| Kookmin Bank Co., Ltd              | 222,464    | 0.6%  |
| Sam Sung Securities Co., Ltd       | 220,592    | 0.6%  |
| 월드투자 주식회사                          | 178,000    | 0.5%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170,505    | 0.5%  |
| 구광모                                | 136,000    | 0.4%  |
| 니치오 주식회사                           | 129,275    | 0.4%  |
| Lee Cheol Hoon                     | 117,000    | 0.3%  |

주) 당사 보통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의해 100% 보유되고 있으며 상기는 KSD가 당사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권(KDR)의 보유자(당사 보통주식의 실질소유자)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 3. 신주예약권등의 상황

(1) 당사업연도의 말일에 당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집행 대가로 교부된 신주예약권 상황

|                           |                 | 제 1 회 신주예약권                                                                                                                                                                                                                  | 제 2 회 신주예약권                                                                                                                                                                                                                                                      |
|---------------------------|-----------------|------------------------------------------------------------------------------------------------------------------------------------------------------------------------------------------------------------------------------|------------------------------------------------------------------------------------------------------------------------------------------------------------------------------------------------------------------------------------------------------------------|
| 발행결의일                     |                 | 2017년 6월 15일                                                                                                                                                                                                                 | 2018년 6월 15일                                                                                                                                                                                                                                                     |
| 신주예약권수                    |                 | 14,500 개                                                                                                                                                                                                                     | 15,000 개                                                                                                                                                                                                                                                         |
| 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br>주식 종류와 수 |                 | 보통주식 72,500 주                                                                                                                                                                                                                | 보통주식 15,000 주                                                                                                                                                                                                                                                    |
| 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               |                 | 신주예약권과 교환에 납입 필요<br>없음                                                                                                                                                                                                       | 신주예약권과 교환에 납입<br>필요 없음                                                                                                                                                                                                                                           |
| 신주예약권 행사 시에<br>출자되는 재산 가액 |                 | 주)1                                                                                                                                                                                                                          | 주)2                                                                                                                                                                                                                                                              |
| 권리 행사기간                   |                 | 2019년 5월 25일부터<br>2022년 5월 24일까지                                                                                                                                                                                             | 2020년 6월 16일부터<br>2023년 6월 15일까지                                                                                                                                                                                                                                 |
| 행사 조건                     |                 | <p>(1) 신주예약권을 할당받은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에도 당사의 이사, 감사, 종업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br/>단 당사의 이사, 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또는 정년 퇴직 기타 정당한 이유에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2)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와 신주예약권의 할당을 받은 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신주예약권 할당에 관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1) 신주예약권을 할당받은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에도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임원, 감사, 종업원(집행인원 포함)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단 당사의 임원, 감사를 임기 만료하고 퇴임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이사회가 특히 인정하면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2)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와 신주예약권의 할당을 받은 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신주예약권 할당에 관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임원<br>보유<br>상황            | 이사<br>(사외이사 제외) | 신주예약권수 9,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47,500 주<br>보유자수(주)3 3 명                                                                                                                                                                        | 신주예약권수 7,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7,500 주<br>보유자수 1 명                                                                                                                                                                                                                 |
|                           | 사외이사            | 신주예약권수 1,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7,500 주<br>보유자수 1 명                                                                                                                                                                             | 신주예약권수 7,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7,500 주<br>보유자수 1 명                                                                                                                                                                                                                 |
|                           | 감사              | 신주예약권수 3,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17,500 주<br>보유자수 3 명                                                                                                                                                                            | 신주예약권수 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0 주<br>보유자수 0 명                                                                                                                                                                                                                         |

- 주)1 한국거래소(KOSDAQ 시장) 상장 시의 공개가액 8,500 원에 상장일 당일에 도쿄 주요 은행이 제시하는 환율 중간값 100 원=10.08 엔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한 할당일 후에 당사가 보통주식당 주식분할 혹은 주식병합을 할 경우 기타 이 경우에 준해 행사가액의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할당일 후 당사가 시가(단 당사의 주식 공개전에는 그 시점의 조정 전 행사 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를 밑도는 가액으로 당사 보통 주식당 신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하는 경우(회사법의 규정에 의거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 당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의 전환 혹은 당사 보통 주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가액으로 조정합니다.
- 2 신주예약권의 할당일 2018년 6월 16일의 전영업일인 2018년 6월 15일의 한국거래소에서의 당사 보통주식을 나타내는 한국예탁증권의 종가에 1.01를 곱한 금액 13,686 원을 할당일의 전영업일에 도쿄 주요은행이 제시하는 한국 원대 고객전신판매장의 환율 100 원=10.39 엔으로 환산한 엔 가액(1 엔 미만의 끝수는 절상함)입니다.
- 3 이사 3명 중 1명은 사용인으로 교부된 후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 당사업연도 중에 직무집행의 대가로 사용인 등에 대해 교부한 신주예약권의 상황

|                             |                  | 제 2 회 신주예약권                                                                                                                                                                                                                                                 | 제 3 회 신주예약권                                                                                                                                                                                                                                                 |
|-----------------------------|------------------|-------------------------------------------------------------------------------------------------------------------------------------------------------------------------------------------------------------------------------------------------------------|-------------------------------------------------------------------------------------------------------------------------------------------------------------------------------------------------------------------------------------------------------------|
| 발행결의일                       |                  | 2018년 6월 15일                                                                                                                                                                                                                                                | 2018년 7월 13일                                                                                                                                                                                                                                                |
| 신주예약권수                      |                  | 77,500 개                                                                                                                                                                                                                                                    | 5,000 개                                                                                                                                                                                                                                                     |
| 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br>주식 종류와 수   |                  | 보통주식 77,500 주                                                                                                                                                                                                                                               | 보통주식 5,000 주                                                                                                                                                                                                                                                |
| 신주예약권의 납입 금액                |                  | 신주예약권과 교환에 납입 필요<br>없음                                                                                                                                                                                                                                      | 신주예약권과 교환에 납입<br>필요 없음                                                                                                                                                                                                                                      |
| 신주예약권 행사 시에<br>출자되는 재산 가액   |                  | 주)1                                                                                                                                                                                                                                                         | 주)2                                                                                                                                                                                                                                                         |
| 권리행사기간                      |                  | 2020년 6월 16일부터<br>2023년 6월 15일까지                                                                                                                                                                                                                            | 2020년 7월 14일부터<br>2023년 7월 13일까지                                                                                                                                                                                                                            |
| 행사 조건                       |                  | <p>① 신주예약권을 할당 받은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도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임원, 감사, 종업원(집행인원 포함)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단 당사의 임원, 감사를 임기 만료하고 퇴임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이사회가 특히 인정하면 이에 적용 받지 않는다.</p> <p>②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와 신주예약권의 할당을 받은 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신주예약권 할당에 관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① 신주예약권을 할당 받은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도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임원, 감사, 종업원(집행인원 포함)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단 당사의 임원, 감사를 임기 만료하고 퇴임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이사회가 특히 인정하면 이에 적용 받지 않는다.</p> <p>②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와 신주예약권의 할당을 받은 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신주예약권 할당에 관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사용인<br>등에<br>대한<br>교부<br>상황 | 당사 사용인           | 신주예약권수 77,5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77,500 주<br>보유자수(주)3 34 명                                                                                                                                                                                                     | 신주예약권수 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0 주<br>보유자수 0 명                                                                                                                                                                                                                    |
|                             | 자회사의 임원 및<br>사용인 | 신주예약권수 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0 주<br>보유자수 0 명                                                                                                                                                                                                                    | 신주예약권수 5,000 개<br>목적이 되는 주식수 5,000 주<br>보유자수 1 명                                                                                                                                                                                                            |

주)1 신주예약권의 할당일 2018년 6월 16일의 전영업일인 2018년 6월 15일의 한국거래소에서의 당사 보통주식을 나타내는 한국예탁증권의 종가에 1.01를 곱한 금액 13,686 원을 할당일의 전영업일에 도쿄 주요은행이 제시하는 한국 원대 고객전신판매장의 환율 100 원=10.39 엔으로 환산한 엔 가액(1 엔 미만의 끝수는 절상함)입니다.

2 신주예약권의 할당일 2018년 7월 14일의 전영업일인 2018년 7월 13일의 한국거래소에서의 당사 보통주식을 나타내는 한국예탁증권의 종가에 1.01를 곱한 금액 12,726 원을 할당일의 전영업일에 도쿄 주요은행이 제시하는 한국 원대 고객전신판매장의 환율 100 원=10.27 엔으로 환산한 엔 가액(1 엔 미만의 끝수는 절상함)입니다.



#### 4. 회사 임원 상황

(1) 이사 및 감사의 상황(2019년 2월 28일 현재)

| 회사에서의 지위 | 이름        | 담당 및 중요한 검직 상황                               |
|----------|-----------|----------------------------------------------|
| 대표이사 사장  | 구철모       | 사장집행임원<br>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
| 전무이사     | 아키야마 미치하루 | 전무집행임원 영업본부장<br>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
| 이사       | 노구치 타케시   | 집행임원 관리본부장                                   |
| 이사       | 야나기타 히로키  | 집행임원 기획본부장 겸 경영기획부장<br>주식회사 케이박스 감사          |
| 이사       | 가와베 히로유키  |                                              |
| 이사       | 김재준       |                                              |
| 상근감사     | 타카하시 노리유키 |                                              |
| 감사       | 호리 요시로    | 호리공인회계사사무소 소장<br>학교법인 후쿠오카대학 감사              |
| 감사       | 시키치 켄코    | 변호사법인 기타하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br>주식회사 베가코퍼레이션 사외이사 |

- 주) 1. 이사 가와베 히로유키 씨와 이사 김재준 씨는 회사법 제 2조 제 15호에서 정하는 사외 이사입니다.  
 2. 감사 호리 요시로 씨와 감사 시키치 켄코 씨는 회사법 제 2조 제 16호에서 정하는 사외 감사입니다.  
 3. 감사 3명은 다음과 같이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타카하시 노리유키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에서 경리부에 재직했으며 경리 및 재무 업무에 종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 호리 요시로 씨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키치 켄코 씨는 변호사 및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2018년 5월 30일 개최한 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야나기타 히로키 씨, 김재준 씨가 이사로 새로 선임되어 각각 취임했습니다.  
 5. 2018년 6월 1일자로 이사 야나기타 히로키 씨의 담당이 집행임원 경영기획부장에서 집행임원 기획본부장 겸 경영기획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책임한정계약 내용의 개요

당사와 각 사외이사 및 각 사외감사는 회사법 제 4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해 같은 법 제 423 조 제 1 항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한도액은 회사법 제 425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최저 책임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등

① 당사업연도 관련 보수 등의 총액

| 구분                | 인원         | 보수 등의 금액        |
|-------------------|------------|-----------------|
| 이사<br>(이 중, 사외이사) | 6 명<br>(2) | 123 백만엔<br>(9)  |
| 감사<br>(이 중, 사외감사) | 3 명<br>(2) | 15 백만엔<br>(6)   |
| 합계<br>(이 중, 사외임원) | 9 명<br>(4) | 139 백만엔<br>(15) |

- 주) 1 이사의 보수 등의 금액에는 사용인 겸무 이사의 사용인분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2013년 5월 27일에 개최한 제 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300 백만엔 이내(단 사용인분 급여는 불포함)로 결의했습니다.  
3 감사의 보수 한도액은 2010년 12월 15일에 개최한 임시정기주주총회에서 연 50 백만엔 이내로 결의했습니다.  
4 상기 보수 등의 금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업연도의 임원퇴직위로충당금의 이월금 28 백만엔(이사 4명에 대해 26 백만엔, 감사 1명에 대해 2 백만엔).
  - 스톡옵션에 의한 보수 금액 1 백만엔(이사 2명에 대해 1 백만엔(중 사외이사 1명에 대해 0 백만엔)).
- ② 당사업연도에 지불한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③ 사외임원이 모회사 등 혹은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임원보수 등의 총액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사외임원에 관한 사항

- ① 타 법인 등의 중요한 겸직 상황 및 당사와 해당 타 법인 등과의 관계
- 감사 호리 요시로 씨는 호리공인회계사무소 소장 및 학교법인 후쿠오카대학 감사입니다. 당사와 겸직처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 감사 시키치 켄코 씨는 변호사법인 기타하마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및 주식회사 베가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입니다. 당사와 겸직처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 ② 당사사업연도에서의 주요 활동 상황

|             | 출석 상황 및 발언 상황                                                                                                                          |
|-------------|----------------------------------------------------------------------------------------------------------------------------------------|
| 이사 가와베 히로유키 | 당 사업연도에 개최한 이사회 24 회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견식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의 관점에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했습니다.                                    |
| 이사 김재준      | 2018년 5월 30일 취임 이후 당사사업연도에 개최한 이사회 17 회 중 15 회 출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요직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견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관한 지견과 경영 전반의 관점에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했습니다. |
| 감사 호리 요시로   | 당 사업연도에 개최한 이사회 24 회 중 22 회, 감사회 13 회 중 13 회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이사회 및 또는 감사회에서 주로 재무, 회계 등에 관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견지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
| 감사 시키치 켄코   | 당 사업연도에 개최한 이사회 24 회 중 23 회 및 감사회 13 회 중 13 회 출석했습니다. 주로 기업 법무에 관해서 변호사 및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견지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

5. 회계감사인의 상황

(1) 명칭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스

(2) 보수 등의 금액

|                                                | 보수 등의 금액 |
|------------------------------------------------|----------|
| 당사업연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 금액                        | 31 백만엔   |
| 당사 및 자회사가 회계감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 기타 재산 상의 이익 합계 금액 | 31 백만엔   |

- 주) 1 당사와 회계감사인이 체결한 감사계약에서 회사법에 의거한 감사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감사의 감사 보수 등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당사업연도에 소요되는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 금액에는 이들의 합계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2 감사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계획내용, 회계감사의 직무수행상황 및 보수 건적 산출 근거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검증을 한 후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 금액에 대해서 동의 판단을 했습니다.
- 3 당사의 중요한 연결 자회사 중 해외 연결 자회사에 대해서는 당사의 회계감사인 이외에 공인회계사 혹은 감사법인(외국에서 이 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포함)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3)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재임 결정의 방침

감사회는 회계감사인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재임 불가에 관한 안건 내용을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회는 회계감사인이 회사법 제 340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거해 회계감사인을 해임합니다. 이 경우, 감사회가 선정한 감사는 해임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을 해임한 취지와 해임 이유를 보고합니다.

## 6.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및 해당 체제의 운용 상황

### (1)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결정 내용에 관한 개요

이사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회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결정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사와 사용인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는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정비하고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으로 관리본부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그 하부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 총괄부문을 설치해 당사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체제 정비, 시정 등에 관한 기획 입안, 정비 및 추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내부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의 업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 ②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체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기타 이사 직무 집행 관련 결재 등의 정보는 법령 및 문서관리규정 등의 사내 규정에 의거해 문서 등을 보관합니다. 또한 정보 관리는 정보관리규정과 기타 여러 규정에 의거해 적절하게 실시합니다.
- ③ 손실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당사는 임원 및 종업원이 업무 집행 및 업무 수행을 할 때 당사 내외에 잠재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본부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제 구축, 리스크 식별, 평가,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담당 부서에서 대처합니다.
- ④ 이사 직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는 정례 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주요사항의 결정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조직, 지휘명령계통, 업무 분담 등을 정한 조직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고 직무 권한 규정에 의거한 직무 집행 상의 책임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직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조직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감시 감독 체제를 정비합니다.

- ⑤ 당사 그룹에서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 그룹 회사의 관리 체제는 관계사의 자율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사관리규정에 의거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사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의 경영 성적, 재무 상황,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는 소재 국가의 법령 및 규칙, 상관습 등의 차이를 감안해서 그 준수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 기본 방침에 준거한 체제를 정비합니다.
- ⑥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할 사용인을 두고자 요구한 경우의 해당 사용인에 관한 사항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감사는 감사계획 및 감사 예산의 책정, 감사회의사록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또한 상근감사가 그 업무를 보조할 사용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한정된 기간, 보조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합니다. 그 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은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⑦ 전 호의 사용인의 이사로부터 독립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용인에 대한 감사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상근감사가 그 업무를 보조할 사용인을 선정한 경우, 그 사용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간의 사용인에 관한 이동, 인사고과 등 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는 상근감사의 사전 동의를 필요합니다. 그 사용인은 타 부서의 사용인을 겸무하지 않고 오로지 상근감사의 지휘 명령에 따릅니다.
- ⑧ 감사에 대한 보고 관련 체제  
 상근감사는 당사의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및 업무 집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타 중요한 회의 혹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당사 그룹의 임원은 이사회 등 당사의 중요한 회의에서 수시로 담당하는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당사 그룹의 임원, 사용인 등은 당사의 감사가 실시하는 업무 집행 상황 감사에서 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 ⑨ 전 호의 보고한 자가 해당 보고를 한 점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보고사항이 허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에 대한 내부 통보를 한 자(관계사 포함)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⑩ 감사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 혹은 채무 처리 관련 방침에 관한 사항  
감사회 및 감사의 직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합니다. 또한 그 직무 집행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사전 지불 또는 상환 등을 청구했을 때 해당 청구에 드는 비용 혹은 채무가 해당 감사 직무 집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해당 비용 또는 채무를 처리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임시로 지출한 비용은 사후에 상환합니다.
- ⑪ 기타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의 감사는 감사 실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당사와 관련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조언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당사 감사회 및 회계감사인과 각각 정기적으로 의견교환회를 개최합니다.

## (2)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운용 상황의 개요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운용 상황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는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업무 매뉴얼, 여러 규정의 체계화 및 업무 표준화를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하고 운용하여 내부 통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부 감사실이 연간 계획에 의거해 업무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중요한 업무 집행을 결의함으로써 결정하고 각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 및 그룹 회사의 업적에 대해서 각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 보고를 포함한 중요 정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되어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적시 개시 규칙에 따라 주주나 투자자의 적절한 투자 판단에 유용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에 적정하게 개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 및 사용인에 대해서 직제에 따른 연수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의 계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업연도에서는 경영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를 메인 테마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점포 운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경품표시법’ 등 점포 운영에 관련된 법규제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회사 차원의 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리스크 관리 상황 및 방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업연도는 동위원회를 4 회 개최하고 각 부서가 실시한 리스크 조사 결과에 의거해 해당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입안하여 그 실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⑤ 감사는 대표이사나 업무집행이사, 그리고 회계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내부 감사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결대차대조표

(2019년 2월 28일 현재)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금액            | 과 목              | 금액            |
|-----------------|---------------|------------------|---------------|
| <b>(자산)</b>     |               | <b>(부채)</b>      |               |
| <b>유동자산</b>     | <b>23,111</b> | <b>유동부채</b>      | <b>6,482</b>  |
| 현금및예금           | 11,396        | 외상매입대금           | 1,302         |
| 외상매출금           | 1,675         | 단기차입금            | 164           |
| 상품              | 6,365         | 1년내상환예정회사채       | 100           |
| 선급금             | 1,936         | 1년내변제예정장기차입금     | 1,796         |
| 미수소비세등          | 754           | 미지불금             | 1,488         |
| 이연법인세자산         | 101           | 미지불법인세 등         | 569           |
| 기타              | 884           | 상여충당금            | 42            |
| 대손충당금           | △3            | 기타               | 1,016         |
| <b>고정자산</b>     | <b>11,082</b> | <b>고정부채</b>      | <b>4,544</b>  |
| <b>유형고정자산</b>   | <b>5,341</b>  | 회사채              | 200           |
| 건물및구축물          | 3,358         | 장기차입금            | 3,408         |
| 차량운반구           | 352           | 임원퇴직위로충당금        | 484           |
| 공구기구비품          | 338           | 퇴직급여관련부채         | 139           |
| 토지              | 1,138         | 이연법인세부채          | 53            |
| 건설가계정           | 153           | 기타               | 259           |
| <b>무형고정자산</b>   | <b>1,226</b>  | <b>부채 합계</b>     | <b>11,027</b> |
| 영업권             | 875           | <b>(순자산)</b>     |               |
| 기타              | 350           | <b>주주자본</b>      | <b>22,224</b> |
| <b>투자 기타 자산</b> | <b>4,514</b>  | <b>자본금</b>       | <b>4,854</b>  |
| 장기대출금           | 1,438         | <b>자본잉여금</b>     | <b>4,776</b>  |
| 거래보증금 및 보증금     | 2,835         | <b>이익잉여금</b>     | <b>12,592</b> |
| 이연법인세자산         | 138           | <b>기타포괄이익누계액</b> | △7            |
| 기타              | 470           | <b>외환환산조정계정</b>  | △7            |
| 대손충당금           | △367          | <b>신주예약권</b>     | 12            |
|                 |               | <b>비지배주주지분</b>   | 937           |
|                 |               | <b>순자산 합계</b>    | <b>23,166</b> |
| <b>자산 합계</b>    | <b>34,193</b> | <b>부채순자산 합계</b>  | <b>34,193</b> |

### 연결손익계산서

2018년 3월 1일에서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액    |        |
|-------------------|-------|--------|
| 매출액               |       | 51,975 |
| 매출원가              |       | 16,163 |
| 매출충이익             |       | 35,811 |
| 판매비및일반관리비         |       | 33,414 |
| 영업이익              |       | 2,396  |
| 영업외수익             |       |        |
| 수취이자              | 35    |        |
| 수취보험금             | 150   |        |
| 기타                | 126   | 312    |
| 영업외비용             |       | 356    |
| 지불이자              | 23    |        |
| 외환차손              | 62    |        |
| 주식교부비             | 236   |        |
| 기타                | 34    |        |
| 경상이익              |       | 2,353  |
| 특별손실              |       |        |
| 감손손실              | 468   | 468    |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       | 1,884  |
|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 1,027 |        |
| 법인세등조정액           | △6    | 1,021  |
| 당기순이익             |       | 863    |
| 비지배주주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       | △238   |
| 모회사주주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       | 1,101  |

### 연결자본변동표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 백만원)

|                                | 주주자본  |       |        |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주주자본합계 |
| 당연결회계연도 기초잔고                   | 631   | 553   | 11,992 | 13,177 |
| 당연결회계연도 변동액                    |       |       |        |        |
| 신주발행                           | 4,223 | 4,223 |        | 8,447  |
| 잉여금배당                          |       |       | △501   | △501   |
| 모회사주주에 귀속하는<br>당기순이익           |       |       | 1,101  | 1,101  |
| 주주자본 이외의 항목의<br>당연결회계연도변동액(순액) |       |       |        |        |
| 당연결회계연도 변동액 합계                 | 4,223 | 4,223 | 599    | 9,047  |
| 당연결회계연도 기말잔고                   | 4,854 | 4,776 | 12,592 | 22,224 |

|                                |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                  | 신주예약권 | 비지배주주<br>지분 | 순자산합계  |
|--------------------------------|--------------|------------------|-------|-------------|--------|
|                                | 외환환산<br>조정계상 | 기타포괄이익<br>누계액 합계 |       |             |        |
| 당연결회계연도 기초잔고                   | -            | -                | -     | -           | 13,177 |
| 당연결회계연도 변동액                    |              |                  |       |             |        |
| 신주발행                           |              |                  |       |             | 8,447  |
| 잉여금배당                          |              |                  |       |             | △501   |
| 모회사주주에 귀속하는<br>당기순이익           |              |                  |       |             | 1,101  |
| 주주자본 이외의 항목의<br>당연결회계연도변동액(순액) | △7           | △7               | 12    | 937         | 942    |
| 당연결회계연도 변동액 합계                 | △7           | △7               | 12    | 937         | 9,989  |
| 당연결회계연도 기말잔고                   | △7           | △7               | 12    | 937         | 23,166 |

## 연결주기표

### 1. 연결계산서류 작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주기 등

#### (1) 연결 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연결 자회사 상황

- (가) 연결 자회사 수 5 개사
- (나) 연결 자회사 명칭
  - 주식회사 케이박스
  -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 주식회사 케이티씨텍스프리
  - 주식회사 탐시티면세점
  - 주식회사 디에프케이박스

상기 중 주식회사 케이박스, 주식회사 디에프케이박스는 당연결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었으므로 연결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케이티씨텍스프리,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주식회사 탐시티면세점은 당연결회계연도에 주식을 새로 취득했으므로 연결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연결 자회사의 사업연도 등에 관한 사항

연결 자회사의 결산일은 연결회계연도 말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 (3) 재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연결재무제표작성의 경우 재외 자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당면의 처리」(실무 대응 보고 제 18 호 2018 년 9 월 14 일 공표분)을 적용하여, 재외 자회사에 대한 연결 결산 상,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4) 회계방침에 관한 사항

##### ① 중요한 자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재고자산

상품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대차대조표 평가액은 수익성 저하에 의한 장부 가격 절하 방법으로 산정)

##### ② 중요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가) 유형고정자산 당사는 정률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단 1998 년 4 월 1 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건물부속설비 제외) 및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은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외 연결자회사는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건물 및 구축물 | 3년~40년 |
| 차량운반구    | 2년~5년  |
| 공구기구비품   | 2년~20년 |

(나) 무형고정자산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 ③ 이연자산의 처리 방법

주식교부비

지출 시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④ 중요한 외화 표시 자산 혹은 부채의 일본 엔화 환산 기준

외화 표시 금전채권채무는 당연결회계연도 말일의 서울 외환중개주식회사의

기준 환율에 의거해 엔화로 환산하고 환산 차액은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 자회사 등의 자산 및 부채는 당연결 회계연도 말일의 서울 외국환거래증개주식회사의 기준환율에 의거해 엔화로 환산하고 수익 및 비용은 기중 평균 환율에 의거해 엔화로 환산하고 환산 차액은 순자산에서의 외화환산조정계정 및 비지배 주주지분에 포함해 계상했습니다.

⑤ 중요한 충당금 계상 기준

(가)대손충당금 채권 대손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실적률로, 대손우려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회수 불능 예상액을 계상했습니다.

(나)상여충당금 종업원의 상여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상여 지급 예상금액 중 당연결회계연도에 부담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임원퇴직위로충당금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당사는 내규에 의거한 당연결회계연도말 요지급액을 계상했습니다.

⑥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의 퇴직 급부에 대비하기 위해 당연결회계연도에서의 퇴직급부채부 및 연금자산 예상액에 의거해 계상했습니다. 수리계산서 상의 차이 및 과거근무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⑦ 중요한 헤지회계 방법

(가)헤지회계 방법 원칙적으로 이월 헤지 처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처리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금리스와프에 대해서는 특례 처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나)헤지수단과 헤지대상 헤지수단 금리스와프  
헤지대상 차입금

(다)헤지방침 금리 리스크의 저감 및 금융수지개선을 위한 대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헤지의 유효성 평가방법 헤지 대상인 시세 변동 또는 현금 흐름 변동과 헤지 수단의 시세 변동 또는 현금 흐름 변동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적확히 함으로써 유효성 평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 처리에 있는 금리 스와프에 대해서는 유효성 평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⑧ 영업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영업권은 5년간의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⑨ 기타 연결회계서류의 작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소비세 등의 회계 처리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회계처리는 세금 불포함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2. 연결대차대조표에 관한 주기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2,938 백만엔

3. 연결손익계산서에 관한 주기

감손손실

당사 그룹은 이하 자산 그룹에 대해서는 감손손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장소       | 용도 | 종류          | 금액(백만엔) |
|----------|----|-------------|---------|
| 한국 서울특별시 | 점포 | 건물 및 건축물    | 96      |
|          |    | 건설가계정       | 271     |
|          |    | 임대보증금 및 보증금 | 44      |

|            |    |          |    |
|------------|----|----------|----|
|            |    | 기타       | 45 |
|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 점포 | 건물 및 건축물 | 7  |
|            |    | 기타       | 3  |

당사 그룹은 점포를 기본 단위로써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저하하여 투자액 회수 기대가 어려워진 점포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까지 감액하여 당해 감소액을 감손손실로써 468 백만엔을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가능가액은 실질매각가액 또는 사용가치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향후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4. 연결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에 관한 주기

(1) 당연결회계연도 말일에서의 기발행 주식 종류 및 총수

보통주식

35,005,517 주

(2)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① 배당금지불액 등

| 결의                     | 주식<br>종류 | 배당금 총액<br>(백만엔) | 1주당<br>배당액(엔) | 기준일          | 효력발생일        |
|------------------------|----------|-----------------|---------------|--------------|--------------|
| 2018년 5월 30일<br>정기주주총회 | 보통주식     | 501             | 20            | 2018년 2월 28일 | 2018년 5월 31일 |

② 기준일이 당연결회계연도에 속하는 배당 중 배당 효력 발생일이 다음 연결회계연도가 되는 것

| 결의 예정                  | 주식<br>종류 | 배당금 총액<br>(백만엔) | 1주당<br>배당액(엔) | 기준일          | 효력발생일        |
|------------------------|----------|-----------------|---------------|--------------|--------------|
| 2019년 5월 29일<br>정기주주총회 | 보통주식     | 210             | 6             | 2019년 2월 28일 | 2019년 5월 30일 |

## 5. 금융상품에 관한 주기

### (1) 금융상품 상황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상품에 대한 활동 방침

당사 그룹은 설비 투자 계획에 비추어 필요한 자금(주로 은행 차입과 회사채 발행)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잉여 자금은 주로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을 운용하거나 단기적인 운전 자금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은 뒤에서 언급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투기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 ② 금융상품의 내용 및 리스크 또는 리스크 관리 체제

영업 채권인 외상매출금은 고객의 신용과 관련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외화 표기 영업 채권은 외환 변동과 관련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리스크에 관해서는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거래 상대별로 기일 및 잔고를 관리하며 동시에 재무 상황 등의 악화 등에 따른 회수 우려의 조기 파악과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에 대해서도 당사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채무인 외상 매입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이내의 지불 기일입니다. 일부 외화 표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외환 변동 리스크가 있지만 항상 동일한 외화 표시 외상 매출금 잔고 범위 내에 있습니다.

차입금, 회사채는 주로 설비 투자 관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상환일은 최장 결산일 후 4년입니다. 그 중 일부는 금리 변동 리스크가 있지만 금융파생상품 거래(금리스와프 거래)를 이용해서 헤지하고 있습니다.

#### ③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금융상품의 시가에는 시장 가격에 의거한 가격 외에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격의 산정에서는 변동 원인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전제 조건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당 가격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2)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2월 28일의 연결대차대조표 계상액, 시가 및 이들의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연결대차대조표<br>계상액 | 시가     | 차액  |
|-----------------|----------------|--------|-----|
| (1) 현금 및 예금     | 11,396         | 11,396 |     |
| (2) 외상매출금       | 1,675          | 1,675  |     |
| (3) 미수 소비세 등    | 754            | 754    |     |
| (4) 장기대출금       | 1,528          | 1,528  |     |
| (5) 거래보증금 및 보증금 | 2,835          | 2,786  | △48 |
| 자산 합계           | 18,190         | 18,141 | △48 |
| (6) 외상 매입 대금    | 1,302          | 1,302  | -   |
| (7) 미지불금        | 1,488          | 1,488  | -   |
| (8) 미지불 법인세 등   | 569            | 569    | -   |
| (9) 단기 차입금      | 164            | 164    | -   |
| (10) 회사채        | 300            | 299    | 0   |
| (11) 장기 차입금     | 5,205          | 5,206  | △0  |
| 부채 합계           | 9,031          | 9,031  | △0  |

주) 금융상품의 시가 산정 방법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사항

자산

(1) 현금및예금, (2)외상매출금, (3)미수소비세 등

이들은 단기간에 결제되므로 시가는 장부 가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장부 가액에 따릅니다.

(4)장기대출금

장기대출금은 건설협력금으로 그 시가에 대해서는 신용 리스크가 근소하므로 회수 예정액을 계약 기간에 대한 국채 이율 등 적절한 지표에 의거한 이율로 할인된 현재 가치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위의 표에는 1년 이내에 회수 예정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상품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시가는 장부가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5)거래보증금 및 보증금

거래보증금 및 보증금의 시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액을 국채 이율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부채

(6)외상 매입 대금, (7) 미지불금, (8) 미지불 법인세 등, (9)단기차입금

이들은 단기간에 결제되므로 시가는 장부 가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장부 가액에 따릅니다.

(10)회사채

회사채의 시가의 경우, 고정 금리에 의한 것은 원리금의 합계액을 해당 회사채의 잔존 기간 및 신용 리스크를 가미한 이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산정했으며 변동 금리에 의한 것은 단기간으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며 시가는 장부 가액과 근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부 가액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표에는 1년 이내에 변제 예정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시가는 원리금의 합계액을 기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차입이율로 산정한 할인 현재 가치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상기 표에는 1년 이내에 변제 예정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1주당 정보에 관한 주기

(1)1주당 순자산액

634 엔 67 전

(2)1주당 당기순이익

32 엔 17 전

## 7. 기업결합 등에 관한 주기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1) 취득의 개요

당사는 2018년 10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박스가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주식을 주주인 주식회사 디원 외 3명으로부터 14백만주(발행주식총수의 70.0%)를 취득한 바를 결의하여 2018년 11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연결자회사로 하였습니다.

① 취득주식수

14백만주(발행주식총수 20백만주)

② 취득금액

18,900백만원

(2) 기업결합의 개요

① 피취득 기업의 명칭 및 사업 내용

피취득 기업의 명칭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사업 내용                소매업

② 기업결합의 주요 이유

자연재해나 국제정세 등에 의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사전 면세점의 특허를 보유하는 주식회사 시티플러스를 자회사화(당사 손자회사)했습니다.

③ 기업결합일

2018년 11월 1일

④ 기업결합의 법적 형식

현금을 대가로 하는 주식 취득

⑤ 결합 후 기업의 명칭

변경 없습니다.

⑥ 취득한 의결권 비율

주식회사 케이박스 70.0%

⑦ 취득기업을 결정하게 된 주요 근거

당사의 중간 지주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케이박스가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의 기발행주식의 70.0%를 취득하여 연결 자회사로 했으므로 동사를 취득기업으로 했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피취득 기업의 업적 기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업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피취득 기업의 취득원가 및 대가 종류별 내역

|       |    |           |              |
|-------|----|-----------|--------------|
| 취득 대가 | 현금 | 1,875 백만엔 | (18,900 백만원) |
| 취득 원가 |    | 1,875 백만엔 | (18,900 백만원) |

(5) 주요 취득 관련 비용의 내용 및 금액

어드바이저 등에 대한 보수·수수료등      16 백만엔

(6) 발생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발생 원인,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

① 발생한 무형고정자산 금액

868 백만엔 (8,752 백만원)

② 발생 원인

주 원인으로써 향후 사업 전개에 의해 기대되어 지는 초과수익력이 있습니다.

③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

5년에 걸친 균등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7) 기업결합일에 받아들인 자산 및 이어받은 부채액과 주요 내용

|      |           |            |
|------|-----------|------------|
| 유동자산 | 1,796 백만엔 | 18,126 백만원 |
| 고정자산 | 391 백만엔   | 3,951 백만원  |
| 자산합계 | 2,188 백만엔 | 22,078 백만원 |

|      |         |           |
|------|---------|-----------|
| 유동부채 | 748 백만엔 | 7,546 백만원 |
| 고정부채 | 176 백만엔 | 1,781 백만원 |
| 부채합계 | 924 백만엔 | 9,327 백만원 |

(8) 기업결합이 연결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완료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당연결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의 개산액 및 산정방법

|             |           |
|-------------|-----------|
| 매출액         | 5,012 백만엔 |
| 영업이익        | 0 백만엔     |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273 백만엔  |
| 당기순이익       | △273 백만엔  |
| 1 주당 당기순이익  | △8.00 엔   |

(개산액의 산정방법)

기업결합이 사업연도 개시일에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여 산정된 매출액 및 손익정보를 영향의 개산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기는 감사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 대차대조표

(2019년 2월 28일 현재)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b>(자산)</b>     |               | <b>(부채)</b>      |                |
| <b>유동자산</b>     | <b>18,986</b> | <b>유동부채</b>      | <b>5,704</b>   |
| 현금 및 예금         | 8,884         | 외상매입대금           | 1,098          |
| 외상매출금           | 1,663         | 1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 100            |
| 상품              | 5,734         | 1년내변제예정장기차입금     | 1,731          |
| 선급금             | 1,408         | 미지불금             | 1,446          |
| 미수 소비세 등        | 611           | 미지불법인세 등         | 569            |
| 이월세금자산          | 101           | 상여충당금            | 42             |
| 기타              | 582           | 기타               | 716            |
| <b>고정자산</b>     | <b>13,836</b> | <b>고정부채</b>      | <b>4,323</b>   |
| <b>유형고정자산</b>   | <b>3,980</b>  | 회사채              | 200            |
| 건물              | 2,511         | 장기차입금            | 3,333          |
| 건축물             | 32            | 퇴직급부충당금          | 131            |
| 차량 운반구          | 352           | 임원퇴직위로충당금        | 484            |
| 공구, 기구 및 비품     | 311           | 자산제거채무           | 174            |
| 토지              | 618           |                  |                |
| 건설 가계정          | 152           |                  |                |
| <b>무형고정자산</b>   | <b>78</b>     |                  |                |
| 소프트웨어           | 51            |                  |                |
| 기타              | 26            |                  |                |
| <b>투자 기타 자산</b> | <b>9,778</b>  | <b>부채 합계</b>     | <b>10,028-</b> |
| 관계사 주식          | 2,466         | <b>(순자산)</b>     |                |
| 장기대출금           | 1,333         | <b>주주자본</b>      | <b>22,782</b>  |
| 관계사 장기대출금       | 3,711         | 자본금              | 4,854          |
| 거래보증금 및 보증금     | 2,043         | 자본잉여금            | 4,776          |
| 이월세금자산          | 138           | 자본준비금            | 4,776          |
| 기타              | 451           | 이익잉여금            | 13,150         |
| 대손충당금           | △367          | 이익준비금            | 34             |
|                 |               | 기타이익잉여금          | 13,116         |
|                 |               | 특별상각준비금          | 21             |
|                 |               | 별도적립금            | 500            |
|                 |               | 이월이익잉여금          | 12,595         |
|                 |               | 신주예약권            | 12             |
|                 |               |                  |                |
|                 |               | <b>순자산 합계</b>    | <b>22,794</b>  |
| <b>자산 합계</b>    | <b>32,823</b> | <b>부채 순자산 합계</b> | <b>32,823</b>  |

### 손익계산서

2018년 3월 1일에서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액    |        |
|----------------|-------|--------|
| 매출액            |       | 49,491 |
| 매출원가           |       | 15,127 |
| 매출총이익          |       | 34,363 |
| 판매비및일반관리비      |       | 31,566 |
| 영업이익           |       | 2,797  |
| 영업외수익          |       |        |
| 수취이자           | 44    |        |
| 수취보험금          | 150   |        |
| 기타             | 51    | 246    |
| 영업외 비용         |       |        |
| 지불이자           | 18    |        |
| 외환차손           | 64    |        |
| 주신교부비          | 236   |        |
| 기타             | 22    | 342    |
| 경상이익           |       | 2,702  |
| 특별손실           |       |        |
| 감손손실           | 10    | 10     |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       | 2,691  |
|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 1,037 |        |
| 법인세등 조정액       | △6    | 1,031  |
| 당기순이익          |       | 1,659  |

### 주주자본변동표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 백만원)

|                               | 주주자본  |           |                 |           |             |           |             |             |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이익<br>준비금 | 이익잉여금       |           |             | 이익잉여금<br>합계 | 주주자본<br>합계 |
|                               |       | 자본<br>준비금 | 자본<br>잉여금<br>합계 |           | 기타이익잉여금     |           |             |             |            |
|                               |       |           |                 |           | 특별상각<br>준비금 | 별도<br>적립금 | 이월이익<br>잉여금 |             |            |
| 당기 기초잔고                       | 631   | 553       | 553             | 34        | 33          | 500       | 11,425      | 11,992      | 13,177     |
| 당기 변동액                        |       |           |                 |           |             |           |             |             |            |
| 신주발행                          | 4,223 | 4,223     | 4,223           |           |             |           |             |             | 8,447      |
| 잉여금배당                         |       |           |                 |           |             |           | △501        | △501        | △501       |
| 당기순이익                         |       |           |                 |           |             |           | 1,659       | 1,659       | 1,659      |
| 특별상각<br>준비금의<br>상쇄            |       |           |                 |           | △12         |           | 12          |             |            |
| 주주자본 이외<br>항목의 당기<br>변동액 (순액) |       |           |                 |           |             |           |             |             |            |
| 당기 변동액 합계                     | 4,223 | 4,223     | 4,223           | -         | △12         | -         | 1,170       | 1,157       | 9,605      |
| 당기 기말잔고                       | 4,854 | 4,776     | 4,776           | 34        | 21          | 500       | 12,595      | 13,150      | 22,782     |

|                            | 신주예약권 | 순자산합계  |
|----------------------------|-------|--------|
| 당기 기초잔고                    | -     | 13,177 |
| 당기 변동액                     |       |        |
| 신주발행                       |       | 8,447  |
| 잉여금배당                      |       | △501   |
| 당기순이익                      |       | 1,659  |
| 특별상각준비금의 상쇄                |       | -      |
| 주주자본 이외 항목의<br>당기 변동액 (순액) | 12    | 12     |
| 당기 변동액 합계                  | 12    | 9,617  |
| 당기 기말잔고                    | 12    | 22,794 |

## 개별주기표

### 1. 중요한 회계 방침 관련 사항에 관한 주기

#### (1) 중요한 자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자회사 주식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가법

② 재고자산  
    상품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대차대조표 평가액은 수익성 저하에 의한 장부 가격 절하 방법으로 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① 유형고정자산                      정률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단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건물부속설비 제외) 및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은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건물          | 3년~39년 |
| 구축물         | 8년~40년 |
| 차량운반구       | 2년~5년  |
| 공구, 도구 및 비품 | 2년~20년 |

② 무형고정자산  
    정액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 (3) 이연자산의 처리 방법

    주식교부비  
    지출 시 전액 비용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 (4) 외화 표시 자산 및 부채의 일본 엔화 환산 기준

    외화 표시 금전채권채무는 당회계연도 말일의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기준 환율에 의거해 엔화로 환산하고 환산 차액은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5) 충당금 계상 기준

①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에 의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실적률로, 대손우려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회수 불능 예상액을 계상했습니다.

② 상여충당금                      종업원의 상여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상여 지급 예상금액 중 당회계연도에 부담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③ 임원퇴직위로충당금              임원 퇴직위로금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 의거한 당회계연도말 요지급액을 계상했습니다.

#### (6) 퇴직급여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당회계연도에서의 퇴직급여채무 및 연금자산 예상액에 의거해 계상했습니다. 수리계산서 상의 차이 및 과거근무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 (7) 중요한 헤지회계 방법

① 헤지회계 방법                      원칙적으로 이월 헤지 처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처리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금리스와프에 대해서는 특례 처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② 헤지수단과 헤지대상              헤지수단    금리스와프

헤지대상 원화 표시 차입금

- ③헤지방침                       금리 리스크의 저감 및 금융수지개선을 위한 대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 ④헤지의 유효성 평가방법   헤지 대상의 개시 때부터 유효성 판정 시점까지의 기간에서 헤지 대상과 헤지 수단의 시세 변동 누계를 비교하고 양자의 변동금액 등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특례처리에 따르면 있는 금리스와프는 유효성 평가를 생략했습니다.
- (8)기타 계산서류 작성 시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  
  소비세 등의 회계처리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회계처리는 세금불포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차대조표에 관한 주기**

|                                 |           |
|---------------------------------|-----------|
| (1)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2,744 백만원 |
| (2) 관계사에 대한 금전채권,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① 단기금전채권                        | 31 백만원    |
| ② 단기금전채무                        | 2 백만원     |
| ③ 장기금전채권                        | 3,711 백만원 |

**3. 손익계산서에 관한 주기**

|              |        |
|--------------|--------|
| 관계와의 거래액     |        |
| 영업거래 이외의 거래액 | 32 백만원 |

**4. 세효과회계에 관한 주기**

이월세금자산 및 이월세금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별 내역

|                   |                |
|-------------------|----------------|
| 이월세금자산            |                |
| 미지불사업세            | 38 백만원         |
| 대손충당금             | 112 백만원        |
| 상여충당금             | 12 백만원         |
| 재고자산평가손           | 44 백만원         |
| 퇴직급부충당금           | 39 백만원         |
| 임원퇴직위로충당금         | 147 백만원        |
| 일괄상각자산            | 18 백만원         |
| 감손손실              | 37 백만원         |
| 자산제거채무            | 53 백만원         |
| 거래보증금 및 보증금       | 50 백만원         |
| 기타                | 11 백만원         |
|                   | <u>567 백만원</u> |
| 이월세금자산 소계         | <u>567 백만원</u> |
| 평가성충당액            | △262 백만원       |
| 이월세금자산합계          | <u>304 백만원</u> |
| 이월세금부채            |                |
| 자산제거채무에 대응하는 제거비용 | △47 백만원        |
| 특별상각준비금           | △9 백만원         |
| 기타                | △7 백만원         |
|                   | <u>△64 백만원</u> |
| 이월세금부채합계          | <u>△64 백만원</u> |
| 이월세금자산의 순액        | 240 백만원        |

**5.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에 관한 주기**

(1) 자회사 및 관계사 등

| 종류  | 회사 등의 명칭  | 의결권 등의 소유 (피소유) 비율 | 관련당사자와의 관계  |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백만엔) | 과목         | 기말잔고 (백만엔) |
|-----|-----------|--------------------|-------------|-------|-------------|------------|------------|
| 자회사 | 주식회사 케이박스 | 소유 직접 100.0%       | 자금 대출 임원 겸임 | 자금 대출 | 3,711       | 관계사 장기 대출금 | 3,711      |
|     |           |                    |             | 이자 수령 | 31          | (유동자산) 기타  | 31         |

거래조건 및 거래조건의 결정 방침 등

주)1 수취이자의 이율은 시장의 실세 금리를 고려한 후 결정했습니다.

2 상기 금액 중 거래 금액에는 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말 잔고에는 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1주당 정보에 관한 주기**

(1) 1주당 순자산액

650 엔 83 전

(2) 1주당 당기순이익

48 엔 46 전

## 독립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19년 4월 29일

주식회사 J T C  
이사회 귀중

###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쓰

지정유한책임사원 공인회계사 타다쿠마 요이치  
업무집행사원

지정유한책임사원 공인회계사 하마무리 세이지  
업무집행사원

당 감사법인은 회사법 제 44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해 주식회사 JTC 의 2018 년 3 월 1 일부터 2019 년 2 월 28 일까지의 연결회계연도의 연결계산서류, 즉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주주자본 등 변동 계산서 및 연결주기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 연결계산서류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경영자의 책임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에 준거해서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는 부정 혹은 오류에 의한 중요한 허위 표시가 없는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부 통제를 정비 및 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감사인의 책임

당 감사법인의 책임은 당 감사법인이 실시한 감사에 의거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연결계산서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있다. 당 감사법인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의 기준에 준거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의 기준은 당 감사법인에게 연결 계산 서류에 중요한 허위 표시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증을 얻기 위해 감사 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시에는 연결 계산 서류의 금액 및 개시에 대해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가 실시된다. 감사 절차는 당 감사법인의 판단으로 부정 혹은 오류에 의한 연결 계산 서류의 중요한 허위 표시 리스크 평가에 의거해 선택 및 적용된다. 감사의 목적은 내부 통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당 감사법인은 리스크 평가 실시 시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사 절차를 입안하기 위해 연결 계산 서류 작성과 적정한 표시에 관련된 내부 통제를 검토한다. 또한 감사에는 경영자가 도입한 회계 방침 및 그 적용 방법 또는 경영자에 의해 실시된 견적 평가도 포함해 전체적인 연결 계산 서류의 표시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당 감사법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입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감사 의견

당 감사법인은 상기의 연결 계산 서류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에 준거해서 주식회사 JTC 및 연결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 집단의 해당 연결 계산 서류 관련 기간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모든 중요한 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이해관계

회사와 당 감사법인 혹은 업무집행사원 간에는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  
이해관계는 없다.

이상

# 독립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19년 4월 29일

주식회사 J T C  
이사회 귀중

##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쓰

지정유한책임사원 공인회계사 타다쿠마 요이치  
업무집행사원

지정유한책임사원 공인회계사 하마무리 세이지  
업무집행사원

당 감사법인은 회사법 제 436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해 주식회사 JTC의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제 25기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및 개별주기표 또는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 계산서류 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경영자의 책임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에 준거해서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에 있다. 이는 부정 혹은 오류에 의한 중요한 허위 표시가 없는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부 통제를 정비 및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감사인의 책임

당 감사법인의 책임은 당 감사법인이 실시한 감사에 의거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있다. 당 감사법인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의 기준에 준거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의 기준은 당 감사법인에게 계산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에 중요한 허위 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증을 얻기 위해 감사 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시에는 계산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의 금액 및 개시에 대해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가 실시된다. 감사 절차는 당 감사 법인의 판단에 의해 부정 혹은 오류에 의한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의 중요한 허위 표시 리스크 평가에 의거해 선택 및 적용된다. 감사의 목적은 내부 통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당 감사법인은 리스크 평가 실시 시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사 절차를 입안하기 위해 계산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 작성과 적정한 표시에 관련된 내부 통제를 검토한다. 또한 감사에는 경영자가 도입한 회계 방침 및 그 적용 방법 또는 경영자에 의해 실시된 견적 평가도 포함해 전체적인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 표시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당 감사법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입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감사 의견

당 감사법인은 상기의 계산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에 준거해서 해당 계산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 관련 기간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모든 중요한 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이해관계  
회사와 당 감사법인 혹은 업무집행사원 간에는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  
이해관계는 없다.

이상

## 감 사 보 고 서

당 감사회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이사 직무 집행에 관해서 각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거해 심의 상 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감사 및 감사회의 감사 방법 및 내용

- (1) 감사회는 감사 방법, 직무 분담 등을 정하고 각 감사로부터 감사 실시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 외에 이사 등 및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그 직무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 (2) 각 감사는 감사회가 정한 감사의 감사 기준에 준거해 감사 방침, 직무 분담 등에 따라 이사, 내부 감사 부문 기타 사용인 등과 의사소통을 피하여 정보 수집 및 감사 환경 정비에 노력했으며 동시에 아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① 이사회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해 이사 및 사용인 등으로부터 그 직무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했으며 중요한 결재서류 등을 열람하여 본사 및 주요 점포에서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과 의사 소통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회사에서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 ② 사업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부터 성립된 기업 집단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회사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체제 정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 및 해당 결의에 의거해 정비되고 있는 체제(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이사 및 사용인 등으로부터 그 구축 및 운용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③ 회계감사인이 독립된 입장을 유지하거나 적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감시 및 검증함과 동시에 회계감사인으로부터의 그 직무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직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회사계산규칙 제131조 각 호의 사항)을 ‘감사에 관한 품질관리기준’ (2005년 10월 28일 기업회계심의회) 등에 따라 정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의 방법에 의거해 해당 사업 연도 관련 사업 보고 및 그 부속 명세서, 계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 등 변동 계산서 및 개별주기표) 및 그 부속명세서 혹은 연결계산서류(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및 연결주기표)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 2. 감사 결과

### (1) 사업보고 등의 감사 결과

- ① 사업 보고 및 그 부속명세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 상황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 ②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 행위 혹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은 상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사업 보고의 기재 내용 및 이사 직무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쓰의 감사 방법 및 결과는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3) 연결계산서류의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쓰의 감사 방법 및 결과는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2019년 4월 30일

|          |      |      |
|----------|------|------|
| 주식회사 JTC | 감사회  |      |
| 상근 감사    | 타카하시 | 노리유키 |
| 사외 감사    | 호리   | 요시로  |
| 사외 감사    | 시키치  | 켄코   |

이상



## 주주총회 참고서류

### 제1호 의안 잉여금 처분의 건

당사에는 주주 여러분에게 이익 환원을 경영상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미래의 사업 전개와 경영 체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부 유보를 확보하면서 안정된 배당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기의 기말 배당에 대해서는 당기의 업적 및 향후의 사업 전개 등을 감안하고 이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배당재산의 종류  
금전으로 합니다.
2. 배당 재산의 할당에 관한 사항 및 총액  
당사 보통주식 1주당 금 6엔 배당총액은 210,033,102엔
3. 잉여금 배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2019년 5월 30일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제안 이유

- (1) 당사의 사업 내용 확대 및 다양화에 동반하는 향하 사업 전개에 대비해 현행 정관 제 2 조(목적)에 사업 목적을 추가해 고문의 신설에 동반해 호수를 뒤로 물립니다.
- (2) 회사법 16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정관의 정함에 의거해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의 취득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기동적인 투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정관 제 8 조의 4 에 대해서 소요 변경을 실시합니다.
- (3) 당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한층 더 내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사회 경영 기능(경영 기본 방침의 심의와 결정) 및 의무 집행의 기동성을 더욱 향상하고 감독 기능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감사회등 설치회사에서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회의에서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본 총회 종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기타 조문의 신설 및 삭제에 동반하는 조수의 변경 등 소요 변경을 실시합니다.

2. 변경 내용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줄 부분은 변경 부분입니다)

| 현행정관                                                            | 변경안                                                                                                        |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상호)<br>제1조(조문 생략)                                              | (상호)<br>제1조(현행 유지)                                                                                         |
| (목적)<br>제2조 당사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br>(1)~(3) (조문 생략)<br>(신설) | (목적)<br>제2조 당사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br>(1)~(3) (현행 유지)<br>(4) <u>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u><br><u>관광선물점 알선업</u>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신설)</p> <p>(4)~(16) (조문 생략)</p> <p><u>(17) 일반근로자파견사업 및<br/>특정근로자파견사업</u><br/>(신설)</p> <p>(18)~(28) (조문 생략)</p> <p>(본점 소재지)<br/>제3조(조문 생략)</p> <p>(기관 구성)<br/>제4조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 외에 다음<br/>기관을 설치한다.</p> <p>(1) 이사회<br/>(2) <u>감사</u><br/>(3) <u>감사회</u><br/>(4) 회계감사인</p> <p>(공고)<br/>제5조(조문 생략)</p> <p>제2장 주식</p> <p>제6조~제8조 (조문 생략)</p> <p>(신주예약권 발행)<br/>제8조의 2 1~3(조문 생략)</p> <p>4 당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당사의 이사,<br/>집행임원, <u>감사</u>, 종업원, 기타 이에 준하는<br/>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스톡옵션으로<br/>신권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5 (조문 생략)</p> <p>제8조의 3 (조문 생략)</p> | <p>(5) <u>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br/>음식점의 알선업</u></p> <p>(6)~(18) (현행 유지)</p> <p>(19) 근로자파견사업</p> <p>(20) <u>유료직업소개사업</u></p> <p>(21)~(31) (현행 유지)</p> <p>(본점 소재지)<br/>제3조 (현행 유지)</p> <p>(기관 구성)<br/>제4조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 외에 다음<br/>기관을 설치한다.</p> <p>(1) 이사회<br/>(2) <u>감사 등 위원회</u><br/>(삭제)<br/>(3) <u>회계감사인</u></p> <p>(공고)<br/>제5조 (현행 유지)</p> <p>제2장 주식</p> <p>제6조~제8조 (현행 유지)</p> <p>(신주예약권 발행)<br/>제8조의2 1~3 (현행 유지)</p> <p>4 당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당사의 이사,<br/>집행임원, <u>감사</u>, 종업원, 기타 이에 준하는<br/>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스톡옵션으로<br/>신권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5 (현행 유지)</p> <p>제8조의3 (현행 유지)</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자기주식 취득) 제8조의 4(신설)</p> <p>당사는 회사법의 정함에 따라 회사법 제461조 제2항에서 정한 분배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할 자기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p> <p>(신설)</p> <p>제9조~제11조 (조문 생략)</p> <p>제3장 주주총회</p> <p>제12 조 ~제16조 (조문 생략)</p> | <p>(자기주식 취득)</p> <p>제8조의 4 <u>당사는 회사법의 정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시장거래 등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u></p> <p>2 <u>당사는 전항의 경우 이외에 회사법의 정함에 따라 회사법 제461조 제2항에서 정한 분배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할 자기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u></p> <p>3 <u>당사의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경우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시장거래 등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자기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할 경우, 회사법 기타 적용법령의 정함에 따르거나 그에 위반하지 않는 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한국거래소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정하는 주식예탁증서의 취득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u></p> <p>제9조~제11조 (현행 유지)</p> <p>제3장 주주총회</p> <p>제12조~제16조 (현행 유지)</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결의 방법)<br/>제17조(조문 생략)<br/>2 정관의 변경, 흡수 혹은 신설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또는 신설분할계획의 승인, 주식분할, 회사 해산, 자본 감소, 사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도, 타회사의 사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기타 회사법 제309조 제2항의 정함에 따른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는 기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 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다.<br/>3 (조문 생략)<br/>제18조~제19조 (조문 생략)<br/>제4장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br/><br/>(이사 인원)<br/>제20조 당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둔다.<br/><u>또는 당사의 이사 4분의 1이상 또는 적어도 1명은 사외 이사로 한다.</u><br/><u>사외이사는 회사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에 추가로 당사의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u></p> | <p>(결의 방법)<br/>제17조 (현행 유지)<br/>2 정관의 변경, 흡수 혹은 신설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또는 신설분할계획의 승인, 주식분할, 회사 해산, 자본 감소, 사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도, 타회사의 사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기타 회사법 제309조 제2항의 정함에 따른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는 기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 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다.<br/>3 (현행 유지)<br/>제18조~제19조 (현행 유지)<br/>제4장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및 <u>감사 등 위원회</u><br/><br/>(이사 인원)<br/>제20조 당사는 이사(<u>감사 등 위원인 자는 제외</u>) 3명 이상을 둔다.</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신설)</p> <p>(신설)</p> <p>(이사 선임)<br/>제21조 당사의 이사 <u>선임은</u>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결의권의 3분의 1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해당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고 <u>실시한다.</u></p> <p>2 (조문 생략)</p> <p>3 사외이사의 수가 제20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수를 밑도는 경우, 이사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비율 또는 수를 만족시키도록 사외이사의 선임에 해당하는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br/>(신설)</p> | <p>2 <u>당사는 감사 등 위원인 이사를 3명 이상 둔다.</u></p> <p>3 <u>당사의 이사 4분의 1이상 또는 적어도 2명은 사외 이사로 한다. 사외이사는 회사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에 추가로 당사의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u></p> <p>(이사 선임)<br/>제21조 당사의 이사는 <u>감사 등 위원인 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를 구별하고</u>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결의권의 3분의 1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해당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고 <u>선임한다.</u></p> <p>2 (현행 유지)</p> <p>3 사외이사의 수가 제20조 <u>제3항</u>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수를 밑도는 경우, 이사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비율 또는 수를 만족시키도록 사외이사의 선임에 해당하는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p> <p>4 <u>당사는 감사 등 위원인 이사 및 그 이외의 이사가 부족한 경우 혹은 회사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을 채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결 감사 등 위원인 이사 및 그 이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u></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이사회 의사록)<br/>제28조 (조문 생략)</p> <p>2 이사회 회의 결과의 요점과 결과,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의 이름 및 반대 이유,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의사록에 기재 또는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u>감사</u>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p> <p>3 (조문 생략)</p> <p>(이사 보수 등)<br/>제29조 이사의 보수, 퇴직위로금, 상여 기타 직무집행의 대가로 당사에서 받는 재산 상의 이익(이하, 보수 등이라고 함) 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30조 (조문 생략)</p> <p>(신설)</p> | <p>(이사회 의사록)<br/>제30조 (현행 유지)</p> <p>2 이사회 회의 결과의 요점과 결과,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의 이름 및 반대 이유,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의사록에 기재 또는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p> <p>3 (현행 유지)</p> <p>(이사 보수 등)<br/>제31조 이사의 보수, 퇴직위로금, 상여 기타 직무집행의 대가로 당사에서 받는 재산 상의 이익(이하, 보수 등이라고 함) 은 <u>감사 등 위원인 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를 구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u></p> <p>제32조 (현행 유지)</p> <p>(감사 등 위원회)<br/>제33조 <u>감사 등 위원회는 모든 감사 등 위원인 이사로 조직되며 감사 등 위원인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 이사로 한다.</u></p> <p>2 <u>감사 등 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 등 위원들 중에서 감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 등 위원장이라고 함)을 선정 또는 해직한다. 단 감사 등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u></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2 <u>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별해서 결의해야 한다.</u></p> <p>3 <u>당사는 회사법 제3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의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주총회에서 보결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u></p> <p>4 <u>전항의 보결 감사 선임에 관련된 결의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은 해당 결의 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u></p> <p>5 <u>감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u></p> <p>6 <u>감사가 임기 만료, 사임 기타 사유로 퇴임하거나 해임된 경우라도 정관에서 규정하는 감사역 인원의 부족에 미치지 않거나 당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u></p> | <p>(삭제)</p> |
| <p><u>(감사 임기)</u></p> <p><u>제33조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u></p>                                                                                                                                                                                                                                                                                                                                                   | <p>(삭제)</p> |
| <p><u>2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감사의 보결로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존 기간과 동일하다.</u></p>                                                                                                                                                                                                                                                                                                                                                                                     |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u>(상근 감사)</u><br/>제34조 감사회는 그 결의로 감사 중에서 1명 이상의 상근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상근 감사는 당사의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 10 제 21항의 상근감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p> <p><u>(감사회의 소집 통지)</u><br/>제35조 감사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감사에 대해서 내는 것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br/>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감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u>(감사회의 결의)</u><br/>제36조 감사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의 과반수로 실시한</p> <p>다.</p> | <p>(삭제)</p> <p>(삭제)</p> <p>(삭제)</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감사회 의사록)<br/>제37조 감사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10년간 당사의 본점에 구비해 둔다.</p>                                                                                                                                                                                                                                                          | (삭제) |
| <p>(감사회 규정)<br/>제38조 감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정관 외 감사회에서 정하는 감사회 규정에 따른다.</p>                                                                                                                                                                                                                                                                         | (삭제) |
| <p>(감사 보수 등)<br/>제39조 감사의 보수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은 이사 보수 등을 위한 의안과는 구별해서 결의해야 한다.</p>                                                                                                                                                                                                                                               | (삭제) |
| <p>(감사의 직무)<br/>제40조 감사의 감사 범위는 회계 감사 및 업무 감사로 한다.</p> <p>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을 말해야 한다.</p> <p>3 감사는 회사법 38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4 감사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당사의 자회사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조사를 할 수 있다.</p> <p>5 이사는 회계 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할 경우 감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 (삭제)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감사 보고)<br/> <u>제41조 감사회는 감사가 그 감사에 관해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감사 보고에 의거해 감사 보고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회가 작성한 감사 보고에는 감사 및 감사회의 감사 방법 및 그 내용, 그 결과 및 감사회가 감사 보고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u></p> <p>(감사의 책임 면제)<br/> <u>제42조 당사는 회사법 제4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태만히 한 것에 의한 감사(감사였던 자를 포함)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령의 한도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u><br/> <u>2 당사는 회사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와의 사이에 임무를 태만히 한 것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해당 계약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한도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u></p> | <p>(삭제)</p> <p>(삭제)</p>                                                                   |
| <p>제6장 계산</p> <p>제43조~제47조 (조문 생략)</p> <p>제7장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p> <p>제48조~제50조 (조문 생략)</p>                                                                                                                                                                                                                                                                                                                                                                                                   | <p>제5장 계산</p> <p>제34조~제38조 (현행 유지)</p> <p>제6장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p> <p>제39 조 ~제41조 (현행 유지)</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p> <p>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p> <p>(1) 이사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당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 주주' 라 한다.)</p> <p>(2)~(5) (조문 생략)</p> <p>(신용공여 등의 금지)</p> <p>제52조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의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p> <p>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p> <p>(1) 이사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당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 주주' 라 한다.)</p> <p>(2)~(5) (현행 유지)</p> <p>(신용공여 등의 금지)</p> <p>제43조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의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현행정관                                                                                                                                                                                                                                                                                                                                                                                                                                                                                               | 변경안                                                                                                                                                                                                                                                                                                                                                                                                                                                                                                                                                                                                                                                                                                                                 |
|----------------------------------------------------------------------------------------------------------------------------------------------------------------------------------------------------------------------------------------------------------------------------------------------------------------------------------------------------------------------------------------------------------------------------------------------------------------------------------------------------|-------------------------------------------------------------------------------------------------------------------------------------------------------------------------------------------------------------------------------------------------------------------------------------------------------------------------------------------------------------------------------------------------------------------------------------------------------------------------------------------------------------------------------------------------------------------------------------------------------------------------------------------------------------------------------------------------------------------------------------|
| <p>(1)~(2) (조문 생략)</p> <p>(3) 감사</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회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p> <p>(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한 신용공여</p> <p>(2)~(3) (조문 생략)</p> <p>(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p> <p>제53조 당 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52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2) (조문 생략)</p> <p>2~4 (조문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1)~(2) (현행 유지)</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회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p> <p>(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집행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한 신용공여</p> <p>(2)~(3) (현행 유지)</p> <p>(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p> <p>제44조 당 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한민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4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2) (현행 유지)</p> <p>2~4 (현행 유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감사의 책임 면제에 관한 경과 규정)</p> <p><u>제1조 2019년 2월 28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전의 회사법 제423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한 감사(감사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책임 면제 및 감사와 체결된 책임한정계약에 관하여는 동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따르는 변경 전 정관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

**제3호 의안**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는 제외) 6명 선임의 건

당사는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된 경우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로 이행하며 현임 이사 전원(6명)은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러므로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는 제외) 6 명의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후보자의 선임 효력 발생은 제 2 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어 정관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는 제외)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후보자 일람**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는 제외) 후보자

| 후보자<br>번호 | 이름       | 신임 및 재임별 | 당사에서의 현재 지위 및 담당        |
|-----------|----------|----------|-------------------------|
| ①         | 구철모      | 재임       | 대표이사장 집행임원              |
| ②         | 아키야마미치하루 | 재임       | 전무이사 영업본부장 전무집행임원       |
| ③         | 야나기타히로키  | 재임       | 이사 기획본부장 집행임원<br>경영기획부장 |
| ④         | 오카 토시후미  | 신임       | 관리본부 부분부장 집행임원 사장실 소속   |
| ⑤         | 가와베 히로유키 | 재임       | 사외                      |
| ⑥         | 김재준      | 재임       | 사외                      |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① | 구철모 | (1962년 10월 11일생) | 재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20,703,00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1991년 3월 니시야마공업 주식회사  
 1993년 5월 도쿄전기상회 벳푸점  
 1994년 3월 당사 설립 대표이사  
 2017년 3월 대표이사 사장 사장집행임원  
 2018년 4월 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중요한 겸무 상황

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감사등위원이 아닌 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구철모 씨는 1994년 당사 설립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로서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당사 그룹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영자로서의 경험, 보유한 견식은 당사 그룹의 당사 영역의 확대와 글로벌 전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이사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② | 아키야마<br>미치하루 | (1951년 5월 1일생) | 재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80,00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1976년 4월 주식회사 교와은행(현재 주식회사 리소나 은행)  
 2000년 3월 쇼와지쇼 주식회사로 파견  
 2003년 2월 니시칸멘테난스 주식회사 사장실장  
 2004년 10월 후지텍스 주식회사 집행임원 호텔사업부 부부장  
 2008년 2월 당사 입사 상무이사  
 2008년 9월 전무이사  
 2016년 6월 전무이사 영업본부장  
 2017년 3월 전무이사 영업본부장 전무집행임원  
 2018년 4월 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중요한 겸무 상황

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감사등위원이 아닌 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아키야마 미치하루 씨는 2008년에 당사에 입사한 이래 재무 경리 및 인사 총무를 담당하였으며 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영업 본부장으로 업적 확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견식은 향후에도 당사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이사 후보로 올렸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③ | 야나기타<br>히로키 | (1970년 3월 29일생) | 재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 1990년 4월 니시신서비스 주식회사
- 1997년 1월 주식회사 에스이
- 2001년 11월 유한책임감사법인 토마쓰
- 2003년 8월 토마쓰 컨설팅 주식회사  
(현 테로이토 토마쓰 컨설팅 합동회사)
- 2010년 10월 동 매니저
- 2015년 7월 당사 입사 내부감사실장
- 2016년 3월 경영기획실장(현 경영기획부장)
- 2017년 3월 집행임원 경영기획부장
- 2018년 4월 주식회사 케이박스 이사 감사
- 2018년 5월 당사 이사 기획본부장 집행임원 경영기획부장

중요한 직무 상황

주식회사 케이박스 감사

감사등위원이 아닌 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야나기타 히로키 씨는 2015년에 당사에 입사한 이래 내부 감사 및 경영 기획을 담당하였으며 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사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그 전까지의 분야에 추가로 재무 경리 및 정보 시스템의 업무 집행에 종사하는 등 풍부한 직무 경험과 견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견식은 향후에도 당사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이사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④ | 오카<br>토시후미 | (1963년 9월 5일생) | 신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0주 |
|--------|---|------------|----------------|----|-------------------------------|

약력, 당에서의 지위 및 담당

- 1988년 4월 스미토모스리엠 주식회사(현 스리엠 재팬 주식회사)
- 1991년 7월 미쓰이물산 주식회사
- 2009년 5월 베트남 미쓰이물산 유한회사 철동 자원 에너지 제네럴 매니저
- 2011년 4월 미쓰이물산 스틸 주식회사 업무본부사업통괄부장
- 2015년 10월 이란 미쓰이물산 유한회사 영업추진부 제네럴 매니저
- 2018년 4월 일본전산리드코리아 주식회사 이사 부사장
- 2019년 3월 당사 입사 집행임원 사장실 소속
- 2019년 4월 관리본부 부분부장 집행임원 사장실 소속

감사등위원이 아닌 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오카 토시후미 씨는 종합상사의 해외 요직을 역임한 후 일본전산리드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이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동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등 해외사업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견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견식은 향후에도 당사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⑤ | <b>가와베 히로유키</b> | (1939년 6월 18일생) | 재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15,00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 1963년 4월 규슈전기공사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규덴코)
- 1996년 6월 동 이사 구마모토지점장
- 1997년 6월 동 상무이사 영업부분부장
- 1999년 6월 동 전무이사 도쿄지점장
- 2001년 6월 동 전무이사 부사장 영업부분부장
- 2002년 6월 동 대표이사 사장 영업부분부장
- 2003년 6월 동 대표이사 사장
- 2007년 6월 동 대표이사 회장
- 2013년 6월 동 상담역
- 2015년 2월 당사 입사 사외이사

감사등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가와베 히로유키 씨는 주식회사 규덴코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견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폭넓은 지견을 살려 당사 그룹의 경영 전반에 대해 제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기여가 기대되므로 계속해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⑥ | <b>김 재준</b> | (1962년 12월 3일생) | 재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 1987년 4월 특수법인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 2006년 8월 동 시장감시부장 겸 종합시황부장
- 2008년 4월 동 이사비서실장
- 2010년 1월 동 전략기업부장 겸 경영지원본부 전문원
- 2011년 4월 동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 보좌
- 2012년 1월 동 경영지원본부장 보좌
- 2014년 5월 동 KOSDAQ본부장 겸 부이사장
- 2014년 7월 동 KOSDAQ시장위원회 위원장
- 2018년 5월 당사 입사 사외이사

감사등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김재준 씨는 한국거래소에서 요직을 역임하는 등 주식시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견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폭넓은 지견을 살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감독을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기여가 기대되므로 계속해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또한 김재준 씨는 과거에 사외이사가 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상기의 이유로 사외이사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 1 구철모 씨는 59.1%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구철모 씨의 자회사 등에 있습니다.
- 2 오카 토시후미 씨는 신입 이사 후보자입니다.
- 3 각 후보자와 당사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4 가와베 히로유키 씨 및 김재준 씨는 사외이사 후보자입니다.
- 5 가와베 히로유키 씨 및 김재준 씨는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지만 각각 사외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은 본 총회 종결 시를 기준으로 가와베 히로유키 씨가 3년 4개월, 김재준 씨가 1년이 됩니다.
- 6 구철모 씨 및 아키야마 미치하루 씨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이사입니다.
- 7 야나기타 히로키 씨는 당사의 연결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박스의 감사입니다.
- 8 당사는 가와베 히로유키 씨 및 김재준 씨의 사이에서 회사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동법 제423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은 회사법 제4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최저책임한도액으로 하고 있으며 가와베 히로유키 씨 및 김재준 씨의 재임이 승인된 경우에는 두 사람과의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4호 의안** 감사등위원인이사 3명 선임의 건

당사는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된 경우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로 이행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등위원인이사 3 명의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안에 관해서는 감사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의 선임 효력 발생은 제 2 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어 정관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등위원인이사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후보자 일람

감사등위원인이사 후보자

| 후보자<br>번호 | 이름       | 신임 및 재임별 | 당사에서의 현재 지위 및 담당 |
|-----------|----------|----------|------------------|
| ①         | 이치키 카즈히로 | 신임       | 사외               |
| ②         | 호리 요시로   | 신임       | 사외감사             |
| ③         | 시키치 켄초   | 신임       | 사외감사             |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① | 이치키<br>카즈히로 | (1957년 10월 29일생) | 신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 1980년 4월 주식회사 후쿠오카은행
- 1994년 9월 동 상하이 주재원 사무소 개설 준비위원장
- 1995년 4월 동 상하이 주재원 사무소 소장
- 1999년 4월 동 잣쇼노쿠마지점 부지점장, 시모노세키지점장, 나가즈미지점장, 오카와지점장
- 2009년 4월 쇼와철공 주식회사로 파견
- 2011년 4월 동 전적
- 2012년 4월 동 경리부장
- 2014년 4월 집행임원 경리부장
- 2017년 4월 동 상급집행임원 관리총괄부부장 겸 구조개혁추진부 부장겸 경영기획실장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이치키 카즈히로 씨는 금융기관 및 사업회사에서의 풍부한 해외 경험과 재무, 경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넓은 지견을 살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한 층 강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근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했습니다.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② | 호리<br>요시로 | (1964년 7월 26일생) | 신임 | 소유하는<br>당사의 주식수<br>보통주식<br>76,00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 1989년 9월 아오야마감사법인 후쿠오카사무소
- 1995년 7월 호리공인회계사사무소 개설 대표사원
- 2000년 1월 후쿠오카감사법인 설립 대표
- 2011년 1월 당사 입사 사외이사
- 2014년 12월 후쿠오카대학 감사

중요한 겸무 상황

호리공인회계사사무소 소장, 후쿠오카대학 감사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호리 요시로 씨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사외감사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 왔습니다. 이 폭넓은 지견을 살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한 층 강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했습니다.

소유하는

|        |   |           |                 |    |                       |
|--------|---|-----------|-----------------|----|-----------------------|
| 후보자 번호 | ③ | 시키치<br>켄코 | (1968년 1월 19일생) | 신임 | 당사의 주식주<br>보통주식<br>0주 |
|--------|---|-----------|-----------------|----|-----------------------|

약력, 당사에서 지위 및 담당

1998년 4월 변호사법인 기타하마법률사무소  
 2007년 1월 동 파트너 변호사  
 2009년 3월 세무사(규슈북부세무사회)  
 2012년 7월 주식회사 베가코퍼레이션 사외감사  
 2015년 7월 동 사외이사(감사 등 위원)  
 동 당사 입사 사외감사

중요한 직무 상황

변호사법인 기타하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및 세무사  
 주식회사 베가코퍼레이션 사외감사(감사 등 위원)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한 이유

시키치 켄코 씨는 변호사 및 세무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사외감사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 왔습니다. 이 폭넓은 지견을 살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한 층 강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등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했습니다.

(주)1 이치키 카즈히로 씨는 신임 이사 후보자입니다.

2 각 후보자와 당사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3 호리 요시로 씨 및 시키치 켄코 씨는 사외이사 후보자입니다.

4 호리 요시로 씨 및 시키치 켄코 씨는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지만 각각 사외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은 본 총회 종결 시를 기준으로 호리 요시로 씨가 8년 4개월, 시키치 켄코 씨가 3년 10개월이 됩니다.

5 당사는 호리 요시로 씨 및 시키치 켄코 씨의 사이에서 회사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동법 제423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한도액은 회사법 제4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최저책임한도액으로 하고 있으며 호리 요시로 씨 및 시키치 켄코 씨의 재임이 승인된 경우에는 두 사람과의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5호 의안**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는 제외) 의 보수금액 등 설정의 건

당사는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로 이행합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 금액은 2013 년 5 월 27 일에 개최한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간 300 백만 엔 이내(단 사용인분 급여는 포함되지 않음)라고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한 이행에 동반해 그를 폐지한 후 새롭게 이사(감사등위원인이사를 제외) 의 보수금액을 정하기로 하고 그 보수 금액을 지금까지의 이사 보수금액 및 현재의 경제 정세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사의 보수 금액을 연간 300 백 만 엔 이내(이 중 사외이사분 50 백만 엔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보수금액에는 사용인 겸무 이사의 사용인분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각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지급 시기 등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사는 6명(이 중 사외이사 2명)이며 제 2 호 의안 및 제 3 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면 이사는 6명(이 중 사외이사 2명)입니다.

또한 본 의안은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에서의 정관 변경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 제 6 호 의안 감사등위원인이사 보수금액 등 설정의 건

당사는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로 이행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 정세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감사등위원인이사의 보수 금액을 연간 50 백 만 엔 이내(이 중 사외이사분 30 백만 엔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감사등위원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지급 시기 등의 결정은 감사등위원인이사의 협의에 의한 것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에 관련된 감사등위원인이사의 인원은 제 2 호 의안 및 제 4 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면 3 명(이 중 사외이사 3 명)입니다.

또한 본 의안은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에서의 정관 변경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 7 호 의안** 퇴임 이사 및 퇴임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불의 건

당사는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로 이행합니다. 이에 동반해 이사 노구치 타케시 씨 및 감사 타카하시 노리유키 씨는 본 총회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임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게 대해서 그 재임 중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당사의 일정 기준에 따라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금액, 지불 시기, 방법 등의 경우, 퇴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퇴임감사에 대해선 감사등위원인이사의 협의에 각각 일임하고자 합니다.

퇴임 이사 및 퇴임 감사의 약력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름       | 약 력                                                 |
|-----------|-----------------------------------------------------|
| 노구치 타케시   | 2016년5월 당사 이사<br>2017년3월 동 이사관리본부장 겸 집행위원<br>현재에 이름 |
| 타카하시 노리유키 | 2015년 7월 당사 감사<br>현재에 이름                            |

이 상